
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08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5.

발 의 자 : 김승수 · 안철수 · 김기웅
이종배 · 박정하 · 조승환
이종욱 · 정동만 · 배현진
이성권 · 김 건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음.

하지만 현행법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효율적인 체육인 복지정책 수립·시행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체육인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제4호).

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담기관이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기관 업무

를 위탁받은 기관은 지원대상 체육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,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 등을 수집·관리·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제공받은 금융정보 등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등 체육인 복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24조,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및 제28조).
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체육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창업준비 자금 및”을 “창업준비,”로, “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”를 “취업, 생활안정 등을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체육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의 대여

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또는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에 따른 업무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”로, “제1항에 따른 자료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”로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) 및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

기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, 제13조 및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체육인 또는 그 부모·배우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“가구원”이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.

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“금융정보”라 한다)
 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“신용정보”라 한다)
 3. 「보험업법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“보험정보”라 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제24조의3(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기관은 지원대상 체육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,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

서로 해당 지원대상 체육인 또는 그 가구원(이하 “명의인”이라 한다)의 금융회사 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금융정보·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“금융정보등”이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제1항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

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의4(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)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기관, 제25조에 따라 체육인 복지 관련 사업을 위임·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24조 또는 제24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등을 수집·관리·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.

제2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·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자금의 대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<u>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</u>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.	제13조(자금의 대여) ① ----- ----- ----- <u>창업준비, -</u> ----- <u>취업, 생활안정 등을</u>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전담기관의 사업) ① 전담기관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	제18조(전담기관의 사업) ① ---- ----- ----- 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<u>체육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의 대여</u>
4. · 5. (생 략)	5. · 6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4조(자료제공의 요청 등) ① (생 략)	제24조(자료제공의 요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<u>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(해당 권한이 위임 ·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 ·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)</u> 및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업무 또는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가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·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신 설>

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또는 제2항-----

--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-----

---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-----

-----.

제24조의2(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기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, 제13조 및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체육인 또는 그 부모·배우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“가구원”이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

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.

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“금융정보”라 한다)

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“신용정보”라 한다)

3. 「보험업법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“보험정보”라 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意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의3(금융정보등의 제공요

청 및 제공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기관은 지원대상 체육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,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대상 체육인 또는 그 가구원(이하 “명의인”이라 한다)의 금융회사 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금융정보·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“금융정보등”이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과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제1항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

<u><신 설></u> 제2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	<u>라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<u>⑥ 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<u>제24조의4(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)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전담기관, 제25조에 따라 체육인 복지 관련 사업을 위임·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24조 또는 제24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등을 수집·관리·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.</u> 제28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<u>3. 제2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·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</u>
---	--